

심 사 보 고 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01호
----------	-------

2017. 10. 24.(화)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7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는 도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연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기관 :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 관련규정 ※ (공통규정)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행자부 훈령 제2호) 편성목 306 출연금

충 북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나. 출연의 필요성

충 북 연 구 원	- 도정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충청북도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법정출연금)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여 우수 인재 발굴·양성에 기여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서의 출연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 실시

다. 주요사업

충 북 연 구 원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충북인재양성재단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 장학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라. 출연계획

(단위:천원)

대상기관	출연금액(도비 100%)		
	2017년(A)	2018년(B)	증감(B-A)
충북연구원	3,145,000	3,674,000	529,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00	20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620,000	650,000	30,000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0	60,000	-

※ 충북연구원 2017년 출연금액 7,945백만원(운영비 3,145, 청사건립비 4,800)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출연계획 개요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2018 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액을 제외한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의결토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예상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대한 해석기준(행정안전부)>

-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다. 종합의견

- 기획관리실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관련규정에 따라 4개 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출연금으로 편성·지원하고 있음.

※ 4개 출연기관: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 따라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 먼저, **충북연구원은**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요과제 및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연중 도의 행정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교류 연구, 정책 솔루션 제고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충북의 썩크탱크(Think tank)로서 도정지원 및 수준높은 연구성과 제고를 통해 우리 충북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충북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증대 노력 등 자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21,383	1,300	1,300	1,600	1,733	2,000	2,750	2,750	7,950

〈2018년도 충북연구원 출연금 내역〉

□ 특별연구조직 운영(공공투자분석센터)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 내역
합 계	350,000천원	400,000천원	50,000천원
사업비	144,166천원	143,603천원	△563천원
	· 사전예타 3건 · 투융자 4회 · 연구과제 1~2건	· 사전예타 5건 · 투융자 6회 · 연구과제 3건	
인건비	205,834천원	256,397천원	50,563천원
	· 센터장 1인 · 박 사 1인 · 석 사 1인	· 센터장 1인 · 박 사 2인 · 석 사 1인	· 박사1인 채용

□ 충북연구원 운영비

○ 출 연 금 : 3,274,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세 출	2018년 충북연구원 운영비 총액(A) ※ 청사신축비, 공투센터 제외한 순수 운영비	5,071,620	▶ 2018년 충북연구원 운영 소요예산 중 3,274백만원 (64.5%)을 도 출연금으로 계상
세 입	2018년 충북연구원 자체수입(B)	1,797,620	
	2018년 도 출연금(C=A-B)	3,274,000	

○ 상세내역

(단위:천 원)

항 목		2017	2018	증 감	사유
합 계		4,400,421	5,071,620	671,199	
기 관 운 영 비	소 계	3,769,821	4,301,620	531,799	
	인 건 비	2,821,883	3,272,971	451,088	<증액내역> : 451백만원 증 · 충원인력 인건비 (5명) : 221백만원 · 기존 인력 인건비 : 230백만원 증 - 급여 인상분(3.4%) 53백만원 증 - 성과급 14백만원 증 - 각종 수당 등 13백만원 증 -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 150백만원 증
	경 비	790,788	979,229	188,441	<증액내역> : 188백만원 증 · 청사 관리비 증액 : 38백만원 증 - 연면적 2477㎡(750평)→3,964㎡(1,201평)으로 63% 증가에 따라 관리비용(수도, 전기 등) 증액 · 운영비 증액(복리후생비, 전산운영비 등) : 150백만원
	예 비 비	157,150	49,420	△107,730	· 예비비 총예산의 1%내 편성
연 구 사 업 비	소 계	630,600	770,000	139,400	
	자체연구 사 업 비	253,000	385,000	132,000	<증액내역> : 132백만원 · 신규 연구직 채용(4인)에 따른 연구비 증가 (기본과제 및 기획사업) · 미래비전 관련 연구비 증가
	분원운영	103,200	122,400	19,200	<증액내역> : 19.2백만원 · 남·북부 분원 세미나, 포럼 등 신규 사업 추진
	자체특별 조직운영	110,000	110,000	0	
	기 획 및 세 미 나	164,400	152,600	△11,800	· 발간 및 세미나 등 예산 절감 운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과 재정·세제 발전 등을 위한 연구조사 전담기관으로 1984년 설립된 이후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조사, 지방행정재정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5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는 2015년부터 신규로 출연을 시작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동일한 분담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출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분담금 출연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이 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연구용역 수행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반영된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17~2021 출연금 중기계획(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입 계	14,735	15,035	15,457	15,892	16,340
출연금	5,629 (38.2%)	5,829 (38.8%)	7,450 (48.2%)	7,450 (46.9%)	8,300 (50.8%)
국가출연	2,329 (15.8%)	2,529 (16.8%)	3,300 (21.4%)	3,300 (20.8%)	3,300 (20.2%)
시도출연	3,300(22.4%) ·시도 2억원 ·세종 1억원	3,300(22.0%) ·시도 2억원 ·세종 1억원	4,150(26.8%) ·시도 2.5억원 ·세종 1.5억원	4,150 (26.1%) ·시도 2.5억원 ·세종 1.5억원	5,000(30.6%) ·시도 3.0억원 ·세종 2.0억원
자체수입	9,106 (61.8%)	9,206 (61.2%)	8,007 (51.8%)	8,442 (53.1%)	8,040 (49.2%)
시도 출연금 증액분		-	증 8.5억		증 8.5억

<2017년도 특별·광역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수행실적>

- 수행 과제 : 17과제 (시도 당 1과제)

구 분	과제 수	의뢰 시.도
상반기	17과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경기

※ 우리도 :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연구('17.3~7월)

<2018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업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출연금	33억원 - 16시·도 : 각 2억원 - 세종시 : 1억원	33억원 - 16시·도 : 각 2억원 - 세종시 : 1억원	
● 정책개발 및 지원 ▶ 시도 정책과제 ▶ 지방국정과제 ▶ 지방자치 발전과제 ● 현안 이슈 대응 지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 지방자치실천포럼 ● 공무원 역량 강화 ● 간행물발간	· 17과제(시도별) · 15과제 · 20과제 · 시도별 1~2건(신규) · 39과제 등 · 포럼 정착 및 성과창출 · 시책 및 직무교육 (5~6과정, 2박3일) · 지방자치정책Brief 외 2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08년 2월 설립되어 충북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함.

- 다만,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자체수입이 고정된 만큼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출연금	40,845	5,700	6,1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620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자문지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기관이고,

-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정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2016년, 2017년 각각 60,000천원 출연

- 우리 충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할 것임.

참고①

충북인재양성재단 기본현황

□ 설립개요

- 목 적 : 국가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 발굴, 양성 및 관리
- 근 거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설 립 일 : 2008. 2. 20
- 정 원 : 5명(사무국장, 직원 4)
- 설립형태 :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 기금적립액 : 781억원(2017. 9월말 기준)

※ 2016년부터 도(50억) 및 시·군(35억) 출연금 중단

⇒ 기금 이자는 사업비로 운영하고 도에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4.7억원)와 수도권장학금(1.8억원) 지원

□ 기금누계 : 78,194백만원

(‘17. 9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년도	수 입								지 출 (사업비)	잔액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일 반 기탁금	이자	기타 수입	계		
계	44,045	28,000	545	3,014	6,660	12,675	598	95,537	17,343	78,194
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16	620	-	-	-	108	1,728	545	3,001	1,946	1,055
17	620	-	-	-	61	970	35	1,686	920	766

참고②

장학금 지원 실적(2008~2017) 및 2018년 계획

구 분	계	사업규모(명)						계	소요액(백만원)					
		'08 ~'13	'14	'15	'16	'17	'18		'08 ~'13	'14	'15	'16	'17	'18
계	11,077	5,646	1,106	1,096	1,099	1,065	1,065	15,142	8,170	1,437	1,417	1,426	1,346	1,346
성 적	8,216	4,216	800	800	800	800	800	10,523	5,873	930	930	930	930	930
수도권	540	90	90	90	90	90	90	1,080	180	180	180	180	180	180
특 기	785	421	77	74	73	70	70	802	451	80	65	66	70	70
곰두리	255	100	30	33	32	30	30	244	97	30	28	29	30	30
도 내 학	320	120	40	40	40	40	40	640	240	80	80	80	80	80
희 망	339	222	27	20	30	20	20	342	215	19	19	29	30	30
특 지	108	46	21	18	13	5	5	123	81	13	10	7	6	6
지 정	20	-	-	-	-	10	10	40	-	-	-	-	20	20
로스쿨	147	84	21	21	21	-	-	767	452	105	105	105	-	-
충 복 사 랑	195	195	-	-	-	-	-	110	110	-	-	-	-	-
연 구	40	40	-	-	-	-	-	366	366	-	-	-	-	-
꿈나무	95	95	-	-	-	-	-	86	86	-	-	-	-	-
복 지	11	11	-	-	-	-	-	15	15	-	-	-	-	-
HCN	6	6	-	-	-	-	-	4	4	-	-	-	-	-

참고③

2018년 인재양성재단 사업비 운영계획

○ 총 출연금액 : 650,000천원

(단위:천원)

단 사 업 위 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50,000	
기관운영비	소 계	470,000	
	인건비	240,000	
	경상비	230,000	
목적사업비	장학금지원	180,000	◦ 수도권장학금 90명 × 2,000,000원 = 180,000,000원

○ 재단수입 : 1,894,000천원('18. 12월 말 예상)

- 이자수익(1,744,000천원), 기탁금(1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항 목	금 액	비 고
계		1,894,000	
목 사 업 적 비	장학금	1,166,000	특지 및 지정장학금 포함
	대학생재능기부	23,000	
	대학생토론경진대회	15,000	
	해외명문대상과의 만남	13,000	
	충북고교 진로탐색	5,000	
	기금확충(기탁자 예우 등)	2,000	
	미래지도자수련회(중·고등)	23,000	
	충북인재대학생수련회	8,000	
	재단10주년 행사	10,000	
	장학생간담회 등	3,000	
	정보화시스템	10,000	
성 과 급	성과급	23,000	
예 비 비	예비비	36,000	
적 립 금	기본재산 적립금	557,000	기탁금 150백만원(예상) 포함

참고④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14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1 (2구간 -20%)	0.5이하 ~	24
2 (기준구간)	0.5~0.7이하	30
3 (2구간 +20%)	0.7~0.9이하	36
4 (2구간 +40%)	0.9초과 ~	42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1 (2구간 -20%)	1~15	24
2 (기준구간)	16~25	30
3 (2구간 +20%)	26~35	36
4 (2구간 +40%)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 기준으로 20%씩 차등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704, 공기업 수 평균 : 21.5(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7	2018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14	+6	10.567	-	522	366	-	492
서울특별시	78	78		1.114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0.807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60	+6	0.724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47	3	36	14	1	24
광주광역시	54	54		0.663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6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6	60	-6	0.891	3	36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0.5	18	3	0.5	18
경기도	84	84		1.006	4	42	96	4	42
강원도	60	60		0.362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0.56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0.63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0.467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0.476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0.614	2	30	35	3	36
경상남도	66	72	+6	0.738	3	36	32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0.5	18	5	0.5	18

1 공통규정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령 제2호)

편제목 306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 ▶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 ▶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지원할 수 없음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마, 보험성격의 재해복구 (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② 기관별 규정

□ 충북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⑩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1부.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701
----------	-----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별 출연 개요

연 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연구원	- 새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정책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3,674,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해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0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3항
3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5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4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3.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인력 충원 및 운영 출연금 지원 : 3,67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0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지방 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안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전국 시도 균등 출연사업

③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 650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70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 진학생의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180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2013년부터 시행)

④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4. 관계법령 발체 : 붙임

붙임 1

1 충북연구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충북연구원 운영	출자·출연금	3,674,000 천원		
출자·출연기관	○ 기 관 명 : (재)충북연구원 ○ 대 표 : 정초시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인 력 : 정원 39명(현원 32명) - 주요사업 :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충북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출연금액 : 3,674백만원 - 연구원 운영 3,274백만원(479백만원 증) - 특별연구조직(공공투자분석센터) 400백만원(50백만원 증)				
출자·출연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환경 등 새 정부 주요 정책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 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출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북연구원 기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 및 새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일자리, 환경 등 주요정책 분야의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 충북 씽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2017년 연구원 청사 신축에 기금사용과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세입 감소와 충북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 대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두표	한충완	이미혜	220-2134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43-220-1141 홈페이지 :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 2016.04.20. 충북연구원 명칭변경				출연기관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17.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1		31			60		
임원 (‘17.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			임 기		
	이사장	○○○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북연구원장			재임기간		
	선임직이사	○○○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풍로펌 변호사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충북대학교 총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세명대학교 대학원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당연직감사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선임직감사	○○○	공인회계사			2017. 09. 01. ~ 2020. 08. 31.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 (단위:백만원)		10,02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3,135
	일반 회계	예산액	4,661	4,819	9,800		부채	2,366
		지자체 지원액	2,750	2,750	7,945		자본	10,769
2016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702				7,491		211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연 계획 >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출자·출연금	200,000 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 표 : (현재 공석임)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 - 인 력 : 69명 - 주요사업 : 지역 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발전 연구사업 지원 ○ 출연금액 : 200백만원 ※ 전국 16 시·도 균등출연 : 각 200백만원 (세종 100백만원)		
출자·출연 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 행복도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 수행		
근거법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3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검토의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각 시도 균등 출연 ○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두표	한충완	이미혜	220-2134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3-220-1141 홈페이지 :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 2016.04.20. 충북연구원 명칭변경				출연기관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17.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1		31			60		
임원 (‘17.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			임 기		
	이사장	○○○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	충북연구원장			재임기간		
	선임직이사	○○○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풍로펌 변호사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충북대학교 총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세명대학교 대학원장			2017. 09. 01. ~ 2020. 08. 31.		
	선임직이사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교수			2017. 09. 01. ~ 2020. 08. 31.		
	당연직감사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선임직감사	○○○	공인회계사			2017. 09. 01. ~ 2020. 08. 31.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 (단위:백만원)		10,02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3,135
	일반 회계	예산액	4,661	4,819	9,800		부채	2,366
		지자체 지원액	2,750	2,750	7,945		자본	10,769
2016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702				7,491		211	

관계법령 발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③ 충북인재양성재단

< 출연 계획 >

사 업 명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출자·출연금	650,000천원
출자·출연 기	○ 기 관 명 : 충북인재양성재단 ○ 이 사 장 : 이 시 중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인 력 : 5명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내용 :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및 수도권장학금 ○ 출연금액 : 650,000천원 - 인재양성재단 운영비 : 470,000천원(인건비 240,000천원, 경상비 230,000천원) - 수도권 장학금 : 180,000천원(2,000천원 × 90명)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재단 운영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시·군 출연금 중단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재단운영비 부족분 계상		
근거·법령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검토의견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인재 재능나눔, 고교생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높이고 있음 - 장학금 지급(연 1,055여명, 1,326백만원) - 장학사업(대학인재 재능나눔 등 6개 사업. 연 700여명, 84백만원) ※ 장학기금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도 50억원, 시·군 35억원을 출연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16년부터 시·군 출연이 불가함(’17. 8. 31. 현재 적립금 : 781억원) ⇒ 이자율 하락과 시·군 출연 중단으로 현재의 장학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재단 운영비 출연 불가피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두표	안창복	최연락	220-214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화번호:043-224-0221 홈페이지:www.chrdf.or.kr		
주요연혁	- '08. 2월 설립등기 - '17. 재단기금 780억 돌파(잔액기준)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17. 9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당연직)	이OO	충청북도지사		’16.09.05 ~ ’18.09.05		
	이사(당연직)	김OO	충청북도교육감		’16.02.12 ~ ’18.02.12		
	”	이OO	청주시장		’16.09.05 ~ ’18.09.05		
	”	조OO	충주시장		’16.09.05 ~ ’18.09.05		
	”	이OO	제천시장		’16.09.05 ~ ’18.09.05		
	”	정OO	보은군수		’16.09.05 ~ ’18.09.05		
	”	김OO	옥천군수		’16.09.05 ~ ’18.09.05		
	”	박OO	영동군수		’16.02.12 ~ ’18.02.12		
	”	홍OO	증평군수		’16.09.05 ~ ’18.09.05		
	”	송OO	진천군수		’16.08.15 ~ ’18.08.15		
	”	나OO	괴산군수		’17.07.20 ~ ’18.02.12		
	”	이OO	음성군수		’16.09.05 ~ ’18.09.05		
	”	류OO	단양군수		’16.02.12 ~ ’18.02.12		
	”	서OO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16.03.18 ~ ’18.03.18		
	”	오OO	충청북도행정국장		’17.07.20 ~ ’18.08.15		
	”	이OO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16.03.18 ~ ’18.03.18		
	”	김OO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17.03.15 ~ ’19.03.14		
	이사(선임직)	장OO	(전)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16.02.12 ~ ’18.02.12		
	”	이OO	명정보기술 대표이사		’16.04.06 ~ ’18.04.06		
	”	연OO	신한은행충북본부장		’16.04.06 ~ ’18.04.06		
	”	이OO	충북농협지역본부장		’16.04.06 ~ ’18.04.06		
	”	오OO	대신정기화물회장		’16.04.18 ~ ’18.04.18		
	”	박OO	충원고등학교 교장		’16.04.18 ~ ’18.04.18		
	”	유OO	조선일보 충북부장		’16.04.18 ~ ’18.04.18		
	”	조OO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17.03.08 ~ ’19.03.07		
	”	이OO	前 대성중학교 교장		’17.03.08 ~ ’19.03.07		
	”	이OO	대한변호사협회 충북협회장		’17.03.08 ~ ’19.03.07		
	감사(당연직)	이OO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17.01.25 ~ ’18.04.06		
	감사(선임직)	변OO	한빛회계법인		’16.09.05 ~ ’18.09.05		
주요기능	우수 인재 발굴·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자본금 (단위:백만원)		75,0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77,057	
	일반회계	예산액	23,097	12,899		6,616	부채 18
		지자체 지원액	9,230	620		620	자본 77,039
2016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911				1,975	936	

관계법령 발췌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4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 계획 >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출자·출연금	6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 대 표 : 박동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 인 력 : 36명(이사장1, 상임이사1, 전문직 19, 행정지원직 15)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자문, 사업타당성, 정책연구·교육 등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12월 ○ 사업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 출연금액 : 60,000천원 -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50%) 감안 전국 시도별 배분 * 17개 시도 출연금액 : 1,014백만원				
출자·출연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사업타당성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 가능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재국	홍순석	심호창	220-224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전화번호 : 02-3489-2700			
					홈페이지:www.erc.re.kr			
주요연혁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 1994.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0. 1 재)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 2002.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17.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6명		36명		-			
임 원 (‘17. 9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17. 1.20 ~ 2020. 1.19			
	상임이사	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2016. 11.24 ~ 2019. 11.23			
	당연직이사 (비상임)	6인	- 행자부(1) : 지방경제지원관 - 광역 시·도(5) : 기획관리(조정)실장		- 당해직위 재임기간 - 광역시도 윤번제 (2년임기)			
	위촉직이사 (비상임)	경○○	서울대 환경공학부 교수		2017. 5.12~2020. 5.11			
		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2017. 5.12~2020. 5.11			
		김○○	한국공기업학회 총무기획위원장		2017. 5.12~2020. 5.11			
		박○○	한국법합회 회장		2017. 5.12~2020. 5.11			
	감사(비상임)	윤○○	이현회계법인 감사본부장		2017. 5.12~2020. 5.11			
주요기능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3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11,9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8,598	
	일	예산액	7,942	14,553		16,003	부채	1,451
	반 회 계	지자체 지원액		1,014		1,008	자본	17,147
2016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082			8,096		986		

참고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14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1 (2구간 -20%)	0.5이하 ~	24	1 (2구간 -20%)	1~15	24
2 (기준구간)	0.5~0.7이하	30	2 (기준구간)	16~25	30
3 (2구간 +20%)	0.7~0.9이하	36	3 (2구간 +20%)	26~35	36
4 (2구간 +40%)	0.9초과 ~	42	4 (2구간 +40%)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 기준으로 20%씩 차등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704, 공기업 수 평균 : 21.5(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7	2018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14	+6	10.567	-	522	366	-	492
서울특별시	78	78		1.114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0.807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60	+6	0.724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47	3	36	14	1	24
광주광역시	54	54		0.663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6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6	60	-6	0.891	3	36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0.5	18	3	0.5	18
경기도	84	84		1.006	4	42	96	4	42
강원도	60	60		0.362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0.56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0.63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0.467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0.476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0.614	2	30	35	3	36
경상남도	66	72	+6	0.738	3	36	32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0.5	18	5	0.5	18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